

약관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유가증권 수탁약정서』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(구)하나은행 약관을 약정사항 추가하여 구행명 삭제후 통합약관으로 개정
(구)외환은행 관련 약관 해당사항없음

개정 전(구.하나은행)	개정 후	비 고
<p>약정사항</p> <p>1.본인은 유가증권을 귀행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탁, 추심, 입금, 반환을 함에 있어 수반되는 유가증권의 변질 또는 기타 불이익 발생의 책임은 귀행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2.유가증권을 추심함에 있어 통상적인 기일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심의뢰함에 따라 수반되는 우편의 지연, 불착, 기타 불이익 발생의 책임은 귀행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3. 이 약정은 귀행의 형편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, 해지 통보를 받는 즉시 보관어음 수탁장을 귀행에 반환한 후 귀행에 보관되어 있는 미추심 유가증권을 반환받겠습니다.</p> <p>4. <신설></p> <p>5. <신설></p>	<p>약정사항</p> <p>1. 귀행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본인(당사)의 어음, 수표 등을 수탁, 보관, 추심, 입금, 반환함에 있어 수반되는 유가증권의 변조, 변질 또는 기타 불이익 발생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본인(당사)이 지겠습니다.</p> <p>2. 유가증권을 추심함에 있어 귀행에서 일상업무 처리방법에 의하여 추심의뢰시 결제과정에서 수반되는 대기, 우편의 지연이나 미도착, 우송 중 망실에 대하여는 귀행에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합니다.</p> <p>3. 귀행은 본인(당사)으로부터 수탁한 유가증권이 기재요건의 누락, 배서불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거절되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4. 본인은 보관어음 수탁수수료 및 격지간 추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심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귀행에서 별도로 정한 소정의 추심수수료를 납부하겠습니다.</p> <p>5. 보관어음을 반환 신청하는 경우 귀행은 '위탁유가증권 반환청구서'상의 인감(또는 서명)과 유가증권 수탁통장 인감(또는 서명)을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·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보관어음을 반환한 경우에는 인감(또는 서명)의 위조, 변조, 도용 및 그밖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도 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	<p>(수수료 납부관련, 책임소재 내용추가, 약정사항 추가_외 전반적인 문구정비)</p>

6. <신설>

6. 이 약정을 귀행의 형편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, 해지 통보를 받는 즉시 유가증권 수탁통장을 귀행에 반환한 후 귀행에 보관되어있는 미추심 유가증권을 반환하겠습니다.